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‘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정원조례에 반영하여 국가역점시책 수행 및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조정 : 584 ⇒ 591명

○ 직급별 정원

- 일 반 직 정원 조정 : 552 ⇒ 559명
- 본 청 정원 조정 : 296 ⇒ 299명
- 직속기관 정원 조정 : 90 ⇒ 92명
- 읍 면 정원 조정 : 156 ⇒ 158명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(직급별 정원) 및 제30조(정원의 규정)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(‘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)

○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[붙임]참조
- 규 제 심 사 : 기획감사실 협의
- 성 별 영 향 평 가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‘17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국가 역점시책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
-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552명에서 559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당초 584명에서 591명으로 조정하였으며,
- 관리기관별로는 성주군 본청에 3명, 직속기관(보건소)에 2명, 읍면(초전면)에 2명이 증원되고 의회와 사업소 정원의 변동은 없으며, 직급별로는 일반직 6급이하 정원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정원조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,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등 국가 정책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급별 승진 확대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